

보고서 개요 및 요약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륜적 범죄 조사

“이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 행위의 정도와 범위, 기간 그리고 특징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드러낸다.”¹

개요:

본 조사(아래에 정의되어 있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북한” 또는 “국가”)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되었거나 현재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전문가들은 현재 8만 ~ 13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며, 그중 많은 이들은, “계급의 원수”를 삼대에 걸쳐 “씨앗”을 절멸한다는 북한의 오래된 정책에 따라 수감자들의 자녀, 배우자, 부모 및 여타 가족 구성원들이다.

본 조사에서는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이하 “로마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11가지 반인륜적 범죄 중 아파르트헤이트(격리적 인종차별)을 제외한 10가지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10개의 반인륜적 범죄는 아래와 같다. (1) 살인 (2) 몰살 (3) 노예화 (4) 강제 퇴거 이주 (5) 구금 (6) 고문 (7) 성폭행 (8) 핍박 (9) 강제적 실종 및 (10)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 본 조사는 검토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 원수 자격으로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원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간부 및 요원들, 간수들 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관리에 관여하는 자들이 상기 범죄 전부 또는 일부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가담, “지휘 책임”을 근거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중 “지휘 책임”은 하급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책임을 진다는 국제 관습법에 따른 오랜 책임의 형태이다.

권고: 본 조사 보고서는 국제연합(UN)이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다른 어떤 국제적인 특별 재판소에 본 보고서에 열거된 반인륜적 범죄를 적절하게 수사, 처벌, 시정할 수 있는 사법 관할권을 부여하고 UN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서 주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 해체, 북한 정권 간부들에 대한 제3국들의 보편적 사법권 행사 (당위성이 뚜렷한 경우),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서 북한에서 이미 과거에 자행됐거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 북한의 형벌 체제에서 나오는 재료나 노역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금지 등을 권고한다.

¹ UN 인권이사회, 마이클 커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조사 위원장의 제 25 차 UN 인권이사회 성명, 제네바(2014년 3월 17일)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385&LangID=E>.

요약

본 조사의 제목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반인륜적 범죄 조사(이하 "본 조사")**로 시민 사회 주도로 지난 2년간 진행한 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본 조사의 목표는 세 가지다.

1.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공공의 인식 제고
2. 축적된 증인들이 반인륜적 범죄가 저질러졌음을 증명할 경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의 설계자들과 감독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제적 및 법적 옵션 모색
3. 국제사회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과거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다른 어떤 시민 사회 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모델 개발

세계변호사협회(IBA) 전쟁범죄위원회가 주관하고 세계변호사협회의 북미 사무소 및 다수의 제휴 조직과 단체들이 후원한 본 조사는 UN 인권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비공식적 후속 조치이다.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만연하며 엄중한 인권 침해"² 조사 임무를 부여 받았다.

위원회의 기념비적 보고서(2014)에서는 다양한 범죄의 엄중함을 열거하면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범죄 자행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특기 사항으로는,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와 그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UN 전문가 집단은 자체 조사를 수행한 후 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 및 기소를 의뢰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2017년 3월에 발행했다. 본 조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UN 전문가 집단이 수행한 상기 작업보다는 더 협소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서 자행되었거나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기 전 머무는 신문실 등 현행 국제법 상 인정되지 않는 범행을 이유로 기타 다른 어떤 시설들에 주민을 억류시킨 행위 등, 신빙성 있는 증언을 입수한 몇몇 중요한 경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심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 조사는 학술지, 보고서, 동영상, 기록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증언 등 다양한 출처에 의존하였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소,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및 기타 재판소의 결정 등 국제형사법 법리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2016년 12월 8일 워싱턴 D.C.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SAIS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하룻 동안의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도입된 증거도 참고하였는데 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나반이템 필레이(위원장) 판사, 토마스 부어겐탈 판사, 마크 하몬 판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정치범으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직 간수 등을 포함한 북한 국가 기관 전 관계자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북한 정치 제도 분야에 종사하는 2명의 전문가들도 증언했다. 나아가, 공청회에서 증거를 제시한 변호사들은, 정치범으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본 조사용으로 작성한 공술서 9건 중 6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² UN 조사위원회 보고서 (A/HRC/25/CRP.1) (이하 "COI 보고서")와 사실 요약 (A/HRC/25/63) (이하 "사실 요약") 확인은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CommissionInquiryonHRinDPRK.aspx>에서 가능.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냈고 최고위급 탈북자인 태영호 공사도 매우 상세한 공술서를 12월 8일 공청회 이후에 본 조사를 위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태 공사는 남한 대중 가요 듣기, 외국 거주인과의 연락 시도, 역대 북한 지도자나 현 지도자의 사진을 구경지도록 하는 것 등도 관리소 구금에 해당하는 정치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3년 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의 숙청 및 처형과 관련되어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인물들중 자신이 직접 알고 지냈던 몇 명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중한 인권 유린과 “조직적 폭력”³의 “기획, 지휘, 명령하는 자는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북한 상층 엘리트들이 모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A. 규명된 사실의 요약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김씨 가문의 수장들은 1948년이래 혹독한 전체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지속시켜왔는 바, 오늘날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 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씨 가문의 세습 통치 70주년을 며칠 앞둔 현재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씨 가문은 자신들의 권위가 김일성이 창안한 “획일적 이념 체제”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는 북한에 대해 거의 완전한 통제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선포해왔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직후 권력에 오른 김정은은 북한의 유일한 정당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감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보안 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의 최고 수장이다. 북한은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 사진, 과거에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수용소를 직접 겪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역시 수용소를 직접 알고 있는 과거 북한 국가 기관 관계자들, 그러한 수십명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정치범 수용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본 조사 보고서에서 정리한 증거 또한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이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천 명에 달하고 지금도 80,000~130,0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다수는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의 가족들이다. 이러한 형태의 집단적 처벌은 김일성 체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8년 김일성은 “계급의 원수”는 삼대의 씨를 말려버려야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했으며, 그 색출 임무는 비밀경찰, 민간 밀고자, 보안 요원으로 구축된 치밀한 망을 통하여 수행된다. 소위 말하는 계급의 원수(와 그 가족)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의적인 구금, 고문, 즉석 처형, 또는 종신형에 처해진다. 수용소 내에서도 “완전 통제 구역”에 수감된 자들은 사실상 석방의 가능성이 없다. 그들은 아예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할 것으로 여겨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 수용소 내 “혁명화 구역”에 수감된 자들은 “재교육”을 거친 후 풀려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수감자들이 과로, 굶주림, 고문,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고 일부는 아예 처형 당한다.

본 조사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및 감독에서 비롯되는 형사적 책임을 살펴보기 위해 로마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11가지의 반인륜적 범죄를 검토하였다. 반인륜적 범죄란 전시 또는 평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또는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심각한 범죄를 뜻하며 로마 규정 제 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11가지의 범죄는 (1) 살인 (2) 몰살 (3) 노예화 (4) 강제 퇴거 이주 (5) 구금 (6) 고문 (7) 성폭행 (8) 핍박 (9) 강제적 실종 (10) 격리적 인종 차별 (11)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조사 보고서는**

³ 태영호는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를 역임했으며 공술서는 2017년 3월 27일자로 제출되었다.

이 11 개의 범죄 중에서, 제시된 사실 관계에 의거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격리적 인종 차별을 제외한 10 개 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본 조사에서 수집한 사실 내용과 증언들은 반인륜적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오고 있다는 UN 조사위원회의 결론과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본 조사 보고서에서 열거된 범죄의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심하게 박해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특히 가혹한 취급을 당한다. 한 전직 간수는 “기독교인들은 반동분자이고 반동분자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 지시를 많이 받았다.”⁴라고 증언했다.
- 종교적 소속 때문에 고문 당하거나 살해 당한 수감자들을 지켜본 증인이 다수 있다.
- 경비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수감자가 임신을 하자 그 경비원은 나무 막대기를 수감자의 질 안에 넣고 하반신을 구타했다. 그녀는 결국 성폭행 당한지 1 주일이 못가 사망했다.
- 임신한 수감자의 복부에 나무 판자를 올리고 그 위로 남자 세 명이 올라가서 낙태를 유도했다.
- 한 증인은 조산을 유도하기 위한 구타를 당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전에 간수들이 신생아를 죽였다.
-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흙이나 독성이 있는 화초 뿌리를 먹고 스스로 낙태를 유도했다.
- 다른 어떤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의 질 안에 고무 튜브를 삽입해 스스로 낙태를 유도했다.
- 성폭행을 당한 십대 소녀들이 대동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간수들이 대동강 주변에 배치될 정도였다.
- 산비탈에서 뒹굴어 낙태를 할 것을 강요한 간수들에게 항의한 임신부 4 명이 처형을 당했다.
- 위의 임신부 4 명이 처형된 이후 소란을 일으킨 수감자 12 명이 총살당했다.
- 임신시킨 자가 필시 고위 관리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감자의 신생아가 경비건의 먹이가 되어 살해되는 것을 전직 간수가 목격했다.
- 외국인(즉 중국 남성)에 의해 임신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 수감자들은 더 가혹한 생활을 견뎌야 한다. 한 증인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에게 분만 유도제를 투여해 태아를 고집어낸 후 젖은 수건으로 신생아를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 전직 북한 군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임신부에게 라베놀(자동차 오일)을 투여해 3 ~ 4 개월 조산을 유도한 후 신생아를 “신문으로 싼 후 땅에 묻기 전에 강제 수용소 뒤에 있는 양동이에 넣어 둔다”⁵

⁴ 북한: 답하고 행동해야 할 때, 세계기독교연대 64 (2007), <http://www.csw.org.uk/2007/06/20/report/35/article.htm> (안명철 증언 인용).

⁵ 데이비드 호크, 숨겨진 굴락, 제 2 판, “산으로 보내진 자”들의 삶과 목소리, 북한인권위원회, 153 (2012), https://www.hrnk.org/uploads/pdfs/HRNK_HiddenGulag2_Web_5-18.pdf.

- 고의적 굶주림, 영양실조, 혹사 등은 극히 흔하고 이로 인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한다.
- 어떤 수용소에서는 매년 1,500 ~ 2,000 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아울러, 자신에게 할당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은 수감자들도 많았다.
- 배고픔에 시달려 음식물을 찾아 뒤지는 것이 들킨 수감자들은 통상적으로 처형당하곤 한다.
- 어떤 수용소에서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산에 올라가 식용 식물을 파서 캐는 모습이 발각되어 총살을 당했다.
- 한 수용소에서는 동료 수감자가 감자를 훔치다가 처형 당했고 또 다른 수용소에서는 간수 거주 시설에 있는 남은 음식을 뒤지다가 잡힌 수감자 수명이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
- 어떤 수감자는 옥수수를 훔쳐 입 안에 숨긴 죄로 처형을 당했다.
- 총살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한 공개 처형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수감자들은 모두 공개 처형을 당한다.
- 정치범 수용소나 그 인근의 대형 매장터에 대한 상세한 기술 등 공동 묘지의 존재는 충실하게 문서화된 내용이 많으며, 수용소 가까운 산 비탈에 시체를 “마구 버린다는” 증언도 있다.
- 어느 정치범 수용소 근처에 미상의 장소에서는 밤중에 처형이 수시로 일어나 총소리도 분명히 들렸다.
- 1990 년 수용소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 당시 1,500 명이 총살 및 사살을 당했고 시체는 모두 폐광산에 버려졌다.
- 생산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십대 청소년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하루에 15 ~ 16 시간에 달하는 고된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
- 증인 중 한 명은 불과 9 살 때 고된 강제 노역(나무 목재 운반)을 견뎌야 했다.
- 한 광산에서는 수감자들이 하루에 20 시간씩 강제 노역을 해야 했고 그 곳에서만 한 해 200 명 가량이 죽었다는 증언도 있다.
- 강제 노역 현장을 감독하는 군인이 경사가 심한 산에서 통나무를 아래로 굴러가도록 해서 나무 목재를 들고 위로 올라오던 수감자 열명이 목숨을 잃었다.
- 강제 노역이나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일부 수감자의 시체를 독방에 던져넣어 두기도 하고, 철조망에 걸쳐놓아서 까마귀들의 먹잇감으로 만들기도 했다.
- 어느 증인은, 어떤 고문실의 경우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벽에 핏자욱과 살점들을 그대로 두고, 죽은 피해자들의 썩은 시체를 그대로 두기도 했다고 묘사했다.
-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처형을 포함한 잔혹 행위를 일부러 다른 수감자들이 뵈히 보는 앞에서 자행함으로써 공포에 떨게 만드는 등 심리적 학대도 만연되어 있다.

- 고문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국제사면위원회의 2014 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고문이 일어나는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⁶는 결론을 내렸다.

본 조사는 로마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 10 가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자행한 책임이 있음직한 개인 및 개인 집단을 아래와 같이 지목하는 바이다.

1.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2. 조선노동당 간부들
3. 국무위원회 위원들
4.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교도국 및 총지휘부 간부들
5.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수사국 간부들
6. 검찰국 간부들
7.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관리들
8. 국가안전보위부[국가보위성] 요원들과 수감시설 간수들

B. 결론 요약

본 조사는 김정은부터 수감시설의 하급 간수들까지 많은 가해자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가담, “지휘 책임”을 근거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중 “지휘 책임”은 하급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책임을 진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오랜 책임의 형태이다. 북한의 지도체제가 워낙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과 그의 핵심측근들은 지휘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으로, 본 조사는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 **반인륜적 범죄 중단:** 본 조사는 고문, 살해, 성폭행, 굶김, 강제 노역(아동 노역),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 박해 등 본 보고서에 나와있는 불법 행위를 북한은 종식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를 종식하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 **UN 인권협약 준수:** 본 조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포함하여 북한이 비준한 UN 인권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한다.

⁶ 2014 년 고문: 30 년간 지켜지지 않은 약속, 국제사면위원회 34 (2014 년 5 월)
<https://www.amnestyusa.org/files/act400042014en.pdf>.

- **정치범 수용소 해체:** 본 조사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제도를 해체하고, 시민들에게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사법 제도 수립을 약속하며, 현재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가 계속해서 해체 상태에 있는지를 감시하는 국제 감시 체제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 **잔혹 행위 인정 및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공개적 설명:** 본 조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한 잔혹 행위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게는 수감 기록을 전달하고 사망자에 대한 적절한 추모를 해주도록 요구한다.
- **구속력 있는 권한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 또는 그러한 기관의 창설:** 본 조사는 본 보고서에 열거된 반인륜적 범죄를 수사, 처벌, 시정할 수 있는 사법 관할권을 UN 이 국제형사재판소(ICC)나 다른 어떤 국제적인 재판소에 부여하고 UN 이 나서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가 주창할 것을 촉구한다.
- **개인적 책임 및 기소:** 본 조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문책을 당하도록 기소 및 처벌될 것을 요구한다.
- **보편적 사법권 행사:**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용의자로 의심이 가는 북한 정권의 고위급 간부를 제 3 국이 자국 국경 내에서 발견할 경우, 제 3 국은 해당 개인을 상대로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하여, 당위성이 뚜렷한 경우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수사 및 기소하는 것을 고려한다.
- **강제 노역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금지:** 본 조사는 북한의 형벌 제도 안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안전장치)를 모든 UN 회원국들이 구현할 것을 요구한다.
-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 본 조사는 자유 교환 가능 통화 발행국들이 북한 내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이러이러한 대상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상호 합의시,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다국적 공조를 통한 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